2021년 귀속 소득 ·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내역 [건강보험료]

(조회기간 : 2021년 01 ~ 12월)

■ 가입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김성환	900814-*****

■ 건강보험료(직장가입자) 내역

(단위:원)

의벼	보수월액(고지금액)	소득월액(납부금액)	
월별	건강보험료①	장기요양보험료②	건강보험료③	장기요양보험료④
01월	147,460	16,980	0	0
02월	147,460	16,980	0	0
03월	147,460	16,980	0	0
04월	207,800	23,250	0	0
05월	221,110	24,790	0	0
06월	221,110	24,790	0	0
07월	168,230	19,380	0	0
08월	168,230	19,380	0	0
09월	168,230	19,380	0	0
10월	168,230	19,380	0	0
11월	168,230	19,380	0	0
12월	168,230	19,380	0	0
연말정산	0	0		
합계	2,101,780	240,050	0	0
총합계	2,341,830			

1. 보수월액 보험료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지한 금액이며,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금액과 다른 경우 회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대상금액은 실제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금액입니다. (둘 이상의 회사에 근무한 경우에는 합산한 보험료가 제공됩니다.)

-1-

2. 소득월액 보험료 : 연간 납부한 금액이 제공됩니다.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021년 귀속 소득 · 세액공제증명서류 [국민연금보험료]

(조회기간 : 2021년 01 ~ 12월)

■ 가입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김성환	900814-*****

■ 국민연금보험료 내역 (단위:원)

월별	직장가입자 고지금액	지역가입자 등 납부금액
01월	178,380	0
02월	178,380	0
03월	178,380	0
04월	178,380	0
05월	178,380	0
06월	178,380	0
07월	199,890	0
08월	199,890	0
09월	199,890	0
10월	199,890	0
11월	199,890	0
12월	199,890	0
직장가입자 소급고지금액	0	
추납보	험료 납부금액	0
실업크레딧 납부금액		0
합계	2,269,620	0
	총합계	2,269,620

- 1. 직장가입자 고지금액: 국민연금공단이 고지한 금액이며, 실제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금액과 다른 경우 회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대상금액은 실제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금액입니다. (둘 이상의 회사에 근무한 경우 합산한 보험료가 제공됩니다.)
- ※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 근로자는 해당 지원금이 공제된 금액으로 월별 고지금액이 제공되며, 지원금 공제 시점에 따라 월별 고지금액이 마이너스(-)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 2. 지역가입자·추납보험료·실업크레딧 납부금액은 연간 납부한 금액이 제공됩니다.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021년 귀속 소득·세액공제증명서류: 기본(지출처별)내역 [보장성 보험,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조회기간 : 2021년 01 ~ 12월)

■ 계약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김성환	900814-****	

■ 보장성보험(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납입내역

(단위:원)

	상 호		보험종-	류			
종류	사업자번	호	증권번:	中	주피보험	l자	납입금액 계
	종피보험자1(수익자)	종피보험자2((수익자)	종피보험자3(수익자)	
	미래에셋생명보	험 (주)	건강담은 GI종신(무)2005(해지환			
보장성	305-81-08	605	800466****		900814-****	김성환	1,649,400
	 인별합계금액		1,0				1,649,400

1. 공제 대상: 근로소득자가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과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료(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포함)

2. 공제 한도 : 100만원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021년 귀속 소득·세액공제증명서류: 기본(지출처별)내역 [보장성 보험,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조회기간 : 2021년 01 ~ 12월)

■ 계약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김수천	530727-*****

■ 보장성보험(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납입내역

(단위:원)

	상 호		보험종-	류			
종류	사업자반	호	증권번:	호	주피보험	자	납입금액 계
	종피보험자1(수익자)	종피보험자2((수익자)	종피보험자3(수익자)	
	삼성생명보험	(주)	무)간편가입보	L장보험			
보장성	104-81-26	688	000082**	***	551222-*****	황말숙	783,000
	삼성생명보험	(주)	무)탑클래스변액유	니버설종신			
보장성	104-81-26	688	000082**	***	530727-*****	김수천	2,517,720
	삼성생명보험 (주)		무)퍼펙트통합보장				
보장성	104-81-26	688	000082**	***	900814-*****	김성환	1,636,440
	미래에셋생명보험 (주)		예방하자 암보험	II(무)2005			
보장성	305-81-08	605	800463****		530727-*****	김수천	1,365,600
	디비손해보험 :	주식회사	프로미카개인용				
보장성	201-81-45	593	220214**	***	530727-*****	김수천	1,252,110

1. 공제 대상: 근로소득자가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과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료(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포함)

2. 공제 한도 : 100만원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021년 귀속 소득·세액공제증명서류: 기본(지출처별)내역 [보장성 보험,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조회기간 : 2021년 01 ~ 12월)

■ 계약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김수천	530727-*****	

■ 보장성보험(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납입내역

(단위:원)

종류	상 호 사업자번호	보험종류 증권번호	주피보험자	 납입금액 계
0	종피보험자1(수익자)	종피보험자2(수익자)	종피보험자3(수익자)	
	인별합계금액			7,554,870

1. 공제 대상: 근로소득자가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과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료(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포함)

2. 공제 한도 : 100만원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021년 귀속 소득 ·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지출처별)내역 [의료비]

(조회기간 : 2021년 01 ~ 12월)

■ 환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김성환	900814-*****

■ 의료비 지출내역 (단위:원)

사 업 자 번 호	상 호	종 류	지출금액 계
7-03-25*	메****	일반	3,300
2-37-00*	<u>O</u> *****	안경 또는 콘텍트렌즈 구 입비용	25,000
6-63-00*	맘****	일반	3,800
9-08-01*	바****	일반	839,300
2-97-00*	목****	일반	4,900
5-95-00*	서****	일반	8,300
5-97-01*	바****	일반	82,900
8-38-00*	민****	일반	10,400
의료비 인별합계금액			952,900
안경구입비 인별합계금액			25,000
산후조리원 인별합계금액			0
인별합계금액			977,900

- 1. 공제 대상 :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
 - ※ 미용 목적 성형(교정) 비용 및 건강기능식품(보약) 구입비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 환급금' 및 출산 전 진료비원지원금에 해당하는 의료비,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의료비 등은 세액공제대상이 아님

-6-

- 2. 공제 한도 : 본인·장애인·65세 이상 자·건강보험 산정특례자·난임시술비(한도 없음) 그 외 부양가족(700만원) ※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는 1인당 연 50만원 이내,
 - 2019년 이후 지출한 산후조리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만 해당)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021년 귀속 소득 ·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지출처별)내역 [의료비]

(조회기간 : 2021년 01 ~ 12월)

■ 환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김수천	530727-*****

■ 의료비 지출내역 (단위:원)

사 업 자 번 호	상 호	종 류	지출금액 계
0-82-00*	연****	일반	41,280
1-09-12*	일****	일반	266,300
7-07-68*	건****	일반	63,900
1-03-74*	반****	일반	4,000
7-96-04*	삼****	일반	1,283,800
7-96-07*	박****	일반	166,700
6-96-00*	본****	일반	38,600
7-93-01*	연****	일반	243,300
의료비 인별합계금액			2,107,880
안경구입비 인별합계금액			0
산후조리원 인별합계금액			0
인별합계금액			2,107,880

- 1. 공제 대상 :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
 - ※ 미용 목적 성형(교정) 비용 및 건강기능식품(보약) 구입비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 환급금' 및 출산 전 진료비원지원금에 해당하는 의료비,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의료비 등은 세액공제대상이 아님

-7-

- 2. 공제 한도 : 본인·장애인·65세 이상 자·건강보험 산정특례자·난임시술비(한도 없음) 그 외 부양가족(700만원) ※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는 1인당 연 50만원 이내,
 - 2019년 이후 지출한 산후조리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만 해당)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021년 귀속 소득·세액공제증명서류: 기본(사용처별)내역 [신용카드]

(조회기간 : 2021년 01 ~ 12월)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김성환	900814-****

■ 전년도, 당해년도 연사용금액 합계

(단위:원)

2020 년 사용금액 합계	2021 년 사용금액 합계	
8,542,593	22,093,849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집계

(단위:원)

일반	전통시장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공연비이용분	합계금액
21,902,199	105,000	35,700	50,950	22,093,849

■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단위:원)

구분	사 업 자 번 호	상 호	종 류	공제대상금액합계
신용카드	104-86-39742	농협은행 주식회사	일반	0
신용카드	120-81-54231	롯데카드 주식회사	일반	138,222
신용카드	214-81-37726	비씨카드 (주)	일반	211,372
신용카드	214-81-37726	비씨카드 (주)	대중교통	0
신용카드	202-81-45602	삼성카드주식회사	일반	95,730
신용카드	202-81-45602	삼성카드주식회사	대중교통	0
신용카드	202-81-48079	신한카드 주식회사	일반	18,436,680
신용카드	202-81-48079	신한카드 주식회사	전통시장	105,000

- 1. 공제대상 :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됨(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
- ※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가 공제대상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 를 재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021년 귀속 소득·세액공제증명서류: 기본(사용처별)내역 [신용카드]

(조회기간 : 2021년 01 ~ 12월)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김성환	900814-****	

■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단위:원)

구분	사 업 자 번 호	상 호	종 류	공제대상금액합계
신용카드	202-81-48079	신한카드 주식회사	대중교통	35,700
신용카드	202-81-48079	신한카드 주식회사	도서공연등	0
신용카드	102-81-14717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	일반	0
신용카드	211-87-21455	주식회사 현대백화점	일반	908,840
신용카드	104-86-56659	하나카드 주식회사	일반	0
신용카드	104-86-56659	하나카드 주식회사	대중교통	0
신용카드	213-86-15419	현대카드주식회사	일반	1,975,625
신용카드	213-86-15419	현대카드주식회사	대중교통	0
신용카드	213-86-15419	현대카드주식회사	도서공연등	50,950
신용카드	101-86-61717	(주) KB국민카드	일반	135,730
신용카드	101-86-61717	(주) KB국민카드	도서공연등	0
인별합	계금액			22,093,849

- 1. 공제대상 :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됨(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
- ※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가 공제대상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 를 재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021년 귀속 소득·세액공제증명서류: 기본(사용처별)내역 [신용카드]

(조회기간 : 2021년 01 ~ 12월)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김수천	530727-*****

■ 전년도, 당해년도 연사용금액 합계

(단위:원)

2020 년 사용금액 합계	2021 년 사용금액 합계	
30,855,284	18,582,160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집계

(단위:원)

일반	전통시장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공연비이용분	합계금액
18,494,960	0	87,200	0	18,582,160

■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단위:원)

구분	사 업 자 번 호	상 호	종 류	공제대상금액합계
신용카드	101-86-61717	(주) KB국민카드	일반	18,494,960
신용카드	101-86-61717	(주) KB국민카드	대중교통	87,200
인별합	계금액	18,582,1		18,582,160

- 1. 공제대상 :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됨(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
- ※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가 공제대상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 를 재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0220117-14788149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10-

2021년 귀속 소득·세액공제증명서류: 기본(사용처별)내역 [직불카드 등]

(조회기간 : 2021년 01 ~ 12월)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김성환	900814-****	

■ 전년도, 당해년도 연사용금액 합계

(단위:원)

2020 년 사용금액 합계	2021 년 사용금액 합계	
5,952,410	5,696,120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집계

(단위:원)

일반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등	합계금액
5,237,499	0	362,700	95,921	5,696,120

■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단위:원)

구분	사 업 자 번 호	상 호	종 류	공제대상금액합계
직불카드 등	214-81-37726	비씨카드 (주)	일반	4,482,100
직불카드 등	214-81-37726	비씨카드 (주)	대중교통	0
직불카드 등	214-81-37726	비씨카드 (주)	도서공연등	0
직불카드 등	102-82-04083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일반	0
직불카드 등	202-81-48079	신한카드 주식회사	일반	750,069
직불카드 등	202-81-48079	신한카드 주식회사	전통시장	0
직불카드 등	202-81-48079	신한카드 주식회사	도서공연등	77,690
직불카드 등	220-81-83676	이베이코리아 유한책임회 사	일반	5,330

- 1. 공제대상: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
- 2. 사용처 구분 : 일반사용분,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공연등 사용분으로 구분 (중고자동차 구매금액의 10%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되며 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
- ※ 실제 사용하신 사용내역과 간소화자료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 등에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0220117-14788149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11-

2021년 귀속 소득·세액공제증명서류: 기본(사용처별)내역 [직불카드 등]

(조회기간 : 2021년 01 ~ 12월)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김성환	900814-****

■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단위:원)

구분	사 업 자 번 호	상 호	종 류	공제대상금액합계
직불카드 등	220-81-83676	이베이코리아 유한책임회 사	도서공연등	18,231
직불카드 등	375-88-00197	주식회사 카카오뱅크	일반	0
직불카드 등	527-88-00686	주식회사 카카오페이	일반	0
직불카드 등	104-81-83559	주식회사 티머니	대중교통	362,700
인별합	계금액			5,696,120

- 1. 공제대상 :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
- 2. 사용처 구분 : 일반사용분,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공연등 사용분으로 구분 (중고자동차 구매금액의 10% 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되며 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
- ※ 실제 사용하신 사용내역과 간소화자료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 등에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12-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021년 귀속 소득 · 세액공제증명서류 [현금영수증]

(조회기간 : 2021년 01 ~ 12월)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김성환	900814-*****	

■ 전년도, 해당년도 연사용금액 합계

(단위:원)

2020년 사용계금액 합계	2021년 사용금액 합계
546,904	8,363,915

■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집계

(단위:원)

일반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등	합계금액
8,363,915	0	0	0	8,363,915

■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단위:원)

		월별 공제대상금액				
74 53	01월	02월	03월	04월	고레디사그애	
구분	종류	05월	06월	07월	08월	공제대상금액
		09월	10월	11월	12월	
		68,927	12,400	63,050	740,871	
현금영수증	일반거래	784,274	923,806	2,411,742	1,507,506	8,363,915
		1,304,508	119,397	17,505	409,929	

- 1. 공제대상 :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합계액,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됨(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
- ※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가 공제대상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홈택스(「홈택스>상담/제보>현금영수증 미발급>미발급신고하기」) 또는 세무서(현금영수증미발급 신고서 제출)에 신청

일련번호 : 20220117-14788149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13-

2021년 귀속 소득 · 세액공제증명서류 [현금영수증]

(조회기간 : 2021년 01 ~ 12월)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김성환	900814-*****	

■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단위:원)

		월별 공제대상금액				
78	조 큰	01월	02월	03월	04월	고레디사그에
구분	종류	05월	06월	07월	08월	공제대상금액
		09월	10월	11월	12월	
		0	0	0	0	
현금영수증	도서.공연비등 거래	0	0	0	0	0
		0	0	0	0	

- 1. 공제대상 :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합계액,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됨(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
- ※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가 공제대상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홈택스(「홈택스>상담/제보>현금영수증 미발급>미발급신고하기」) 또는 세무서(현금영수증미발급 신고서 제출)에 신청

-14-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021년 귀속 소득 · 세액공제증명서류 [현금영수증]

(조회기간 : 2021년 01 ~ 12월)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김수천	530727-*****

■ 전년도, 해당년도 연사용금액 합계

(단위:원)

2020년 사용계금액 합계	2021년 사용금액 합계	
200,000	0	

■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집계

(단위:원)

일반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등	합계금액
0	0	0	0	0

■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단위:원)

		월별 공제대상금액				
78	, , , , , , , , , , , , , , , , , , ,	01월	02월	03월	04월	고테네사그에
구분	종류	05월	06월	07월	08월	공제대상금액
		09월	10월	11월	12월	
		0	0	0	0	
현금영수증	일반거래	0	0	0	0	0
		0	0	0	0	

- 1. 공제대상 :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합계액,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됨(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
- ※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가 공제대상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홈택스(「홈택스>상담/제보>현금영수증 미발급>미발급신고하기」) 또는 세무서(현금영수증미발급 신고서 제출)에 신청

일련번호 : 20220117-14788149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15-

2021년 귀속 소득·세액공제증명서류: 기본(지출처별)내역 [퇴직연금]

(조회기간 : 2021년 01~12월)

■ 가입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김성환	900814-****

■ 퇴직연금 납입내역 (단위:원)

상호	사업자번호	당해년도 납입금액 (ISA계좌만기전환 납입금액 포함)	당해년도 인출금액 (ISA계좌만기전환 납입금액중 인출금액 포함)	순납입금액 (ISA계좌만기전환 순납입금액 포함)
계좌번호	연금구분	ISA계좌만기전환 납입금액	ISA계좌만기전환 인출금액	ISA계좌만기전환 순납입금액
(주) 우리은행	201-81-02819	500,000	0	500,000
112170****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0	0	0
순납입금	금액 합계	500,		

- ※ 연금계좌(연금저축, 퇴직연금) 납입액은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연간 납입액을 기준으로 세액공제 금액을 계산하므로 조회기간을 선택하여 조회한 경우에도 1년 전체 납입액이 조회됩니다.
- 1. 퇴직연금 : 연간 근로자 부담금 공제 (회사 부담금 제외)
- 2. 공제 대상: 납입액(전환 신청 금액 포함)에서 인출액을 제외한 순납입액 합계
- 3. 공제 한도 :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순납입액을 합하여 연 700만원 한도 (연금저축계좌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1억2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자 400만원, 초과자는 300만원을 한도로 함)

-16-

4. 퇴직연금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 후 금융기관에서 연간 납입액을 제출합니다.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021년 귀속 소득·세액공제증명서류:기본내역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조회기간 : 2021년 01 ~ 12월)

■ 차입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김성환	900814-****

■ 주택임차차입금 상환내역

(단위:원)

취급기관	사업자번호	대출계좌번호	대출일	상환액 계
(주)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102-81-21843	408730****	2020-06-11	4,835,091
합 계				4,835,091

- 1. 공제대상자: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인 근로자
- ※ 임대차계약증서는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세대주, 세대원) 명의여야 함
- 2. 공제대상금액: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출기관 또는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금액의 40%

-17-

※ 주택임차차입금 공제 요건은 연말정산간소화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021년 귀속 소득·세액공제증명서류: 기본(취급기관별)내역 [주택마련저축]

(조회기간: 2021년 01~12월)

■ 계약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김성환	900814-****		

■ 주택마련저축 납입내역

(단위:원)

취급기관 (사업자번호)	계좌번호	저축구분	저축명	가입일자	납입금액 계
(주) 우리은행 (201-81-02819)	107351****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2017-03-07	1,200,000
합 계					1,200,000

- 1. 공제대상 :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 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해당 연도에 납입한 금액(청약저축, 주택청약저축은 240만원 한도, 근로자주택마련저축은 월 납입액 15만원 이하)의 40%(세대주가 아닌 경우 공제대상 아님)
- ※ 2014.12.31.이전 가입자 중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2018년 납입분부터 공제대상 아님
- ※ '09.12.31. 이전 가입한 청약저축의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청약저축 가입 당시 기준시가(가입 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도 공제 가능
-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무주택 확인서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한 경우 공제 가능
- ※ 연도 중에 중도 해지한 경우에는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단, 주택 당첨으로 인하여 해지된 청약저축의 경우에는 공제 가능

-18-

2. 공제한도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과 합하여 연 300만원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